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31일, 진종오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진종오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기금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10. (생 략)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저소득층,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11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3) 검토의견

○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국민체육진흥공단 관리·운용)은 국민체육 진흥 연구, 국민체육시설 확충, 선수·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인 복지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1] 개정안은 저소득층 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도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2]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한부모가족 등 보다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3].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삭제 <2021. 8. 10.>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2014. 12. 23.>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피해자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참고로, 현행법 제10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현황]

<table>
<tr><td>사업
목적</td><td>o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 및 장애인(만 5～69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향유기회 제공</td></tr>
<tr><td>사업
대상</td><td>o 저소득층 유·청소년
- 지원연령: 만 5～18세 유·청소년
-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o 장애인
- 지원연령: 만 5～69세 장애인
- 수급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td></tr>
<tr><td>사업
내용</td><td>o 1인당 매월 10만원(저소득층 유·청소년)/ 11만원(장애인) 범위 내 수강료 지원
o 1인당 지원기간: 연간 12개월</td></tr>
<tr><td>예산</td><td>o ’24년 120,344백만원 (운영비·사업비 포함)
*민간경상보조(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td></tr>
<tr><td>연혁</td><td>o 저소득층 유·청소년 지원: 2009년～
o 장애인 지원: 2019년～</td></tr>
<tr><td>추진
실적</td><td>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2021</td><td>2022</td><td>2023</td><td>2024.10.</td></tr>
<tr><td rowspan="3">저소득층
유·청소년</td><td>신청인원(명)</td><td>75,840</td><td>86,594</td><td>106,968</td><td>125,495</td></tr>
<tr><td>수혜인원(명)</td><td>71,089</td><td>83,313</td><td>105,101</td><td>124,378</td></tr>
<tr><td>예산액(백만원)</td><td>29,639</td><td>47,138</td><td>73,599</td><td>101,353</td></tr>
<tr><td rowspan="3">장애인</td><td>신청인원(명)</td><td>7,014</td><td>14,193</td><td>22,726</td><td>49,469</td></tr>
<tr><td>수혜인원(명)</td><td>6,223</td><td>11,259</td><td>20,006</td><td>28,497</td></tr>
<tr><td>예산액(백만원)</td><td>3,597</td><td>6,621</td><td>11,633</td><td>18,991</td></tr>
</table>
</td></tr>
</table>

○ 문체부는 기금의 지원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 수혜자의 고유식별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는 한편,[4] 기금의 지원

3) 참고로,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원로 예술인 등 취약예술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
「도서관법」에서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장애인·수급권자·농어촌주민·다문화가족 구성원·북한이탈주민·65세이상 등)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취약계층’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5)]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4.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 문체부 수정안 >

제22조(기금의 사용) ① (생략) 1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없 음